

2.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
 3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방음·방진시설의 설치
 4.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·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[본조신설 2020. 6. 9.]

제5장 보칙

제60조 삭제 <2011. 8. 4.>

제61조(보고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. <신설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24. 1. 16.>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8. 4., 2013. 3. 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·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17. 10. 24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<개정 2011. 8. 4.>

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8. 4., 2013. 3. 23.>

[제목개정 2011. 8. 4.]

제62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2. 4.,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20. 4. 7., 2022. 1. 18.>

1. 제17조제1항(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물류창고업 등록의 취소
- 1의2.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또는 제21조의6에 따른 지정의 취소
2.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·승인 또는 인가의 취소

제63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1. 8. 4., 2013. 3. 23., 2020. 4. 7.>

1.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
2.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
3.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
4.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

제64조(권한의 위임)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「항만법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2. 4., 2011. 8. 4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17. 3. 21., 2018. 12. 18., 2020. 4. 7., 2022. 1. 18.>